



정치기사 익명 취재원 표기 관행

미국 뉴욕타임스와 한국 주요 일간지 비교 연구

이나연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김창숙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
김지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A Study on the Journalism Practice of Anonymous News Sources of Political News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Newspapers and the New York Times*

Na Yeon L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Changsook Kim ***

(Research Professor, Ewha Communication & Media Research Center, Ewha Womans University)

Jeehyun Kim ****

(Principal Researcher, Communication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Korean newspapers' writing practices and to seek improvements by comparing the journalism practice of using anonymous news sources in the political news coverage in Korean newspapers with that of the New York Times. Scholars in journalism research point out that anonymous sources should only be used in inevitable cases, and by providing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about the anonymous sources. Based on the guidelines, this study analyzed information on anonymous sources by determining (1) whether the article provides the reason why the news source was not disclosed, (2) whether news articles provide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identity of anonymous sources so that news users can trust the news coverage. Also examined were the terms used to describe anonymous sources in the Korean newspapers. By conducting a content analysis of 1088 cases, including 975 political articles in six major Korean

* This research was based on quantitative data of the political journalism research project conducted by the Journalism Research Group(이 논문은 좋은저널리즘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치 저널리즘 연구 프로젝트의 양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 larosa@sungshin.ac.kr, corresponding author

*** mulsu@ewha.ac.kr

**** realjyyun@gmail.com

newspapers and 113 political articles in the New York Times, we found that (1) 499 (45.9%) articles cited anonymous sources, within which appeared 925 anonymous sources; (2) 798 anonymous sources appeared in the Korean newspapers, out of which only 10 cases (1.3%) revealed the reason for the use of anonymous sources, whereas the New York Times accounted for 127 anonymous sources, out of which 10 cases (7.9%) offered reasons for anonymity; and (3)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articles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anonymous sourc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60 cases (7.5%) in Korea and 48 cases (37.8%) in the New York Times. The most frequently used notation for anonymous sources in the Korean news articles was 'the official', which was used to describe 364 anonymous sources.

Keywords: anonymous news sources, reason for using anonymous sources, information on anonymous sources, classification of anonymous news sources

1. 서론

“저널리스트의 업무란 어떤 일이 정말로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당신이 백악관, 대법원, 그리고 CIA나 국방부의 내부 상황에 대해 보도할 때, 어떻게 온더레코드(On the record)로만 정보를 취재할 수 있을지 말해보라.”¹⁾

미국 저널리즘 역사에 한 획을 장식한 ‘워터게이트 특종’ 주역인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의 밥 우드워드(Bob Woodward)는 워터게이트 이후 익명 취재원에 의존한 보도가 늘어나 학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익명 취재원 사용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대 미국의 또 다른 유력 일간지인 USA투데이 설립자 알 뉴하스(Al Neuharth)는 2004년 해당 일간지의 칼럼니스트가 칼럼 내용과 취재원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자 자사 기자들에게 더 이상 익명 취재원의 발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지 말라며 익명 취재원은 ‘저널리즘의 악(evil of journalism)’이라고 비난했다(Duffy, 2014).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널리즘에서 익명 취재원(unnamed or anonymous sources)은 오랫동안 논쟁적인 주제였다. 익명 취재원이란 기사에서 취재원의 이름 등 신원을 밝히지 않는 관행으로 저널리즘 윤리에서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지만(Donsbach & Klett, 1993; Schiller, 1979),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다양한 취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익명 취재원의 사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저널리즘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방증이라는 주장도 있다(Blankenburg, 1992). 현장의 많은 기자들도 익명 취재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범일 뿐이라고 반발한다. 밥 우드워드도 워터게이트 특종은 익명 취재원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Shepard, 1994), 일부 학자들도 역사를 바꿀 만큼 중요한 기사 중 다수는 익명 취재원 덕분이라고 주장한다(Alexander, 2009; Blankenburg, 1992; Coile, 2005; Okrent, 2004).

저널리즘 학자들은 익명 취재원 사용 관행을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두 가지 가치의 충돌로 본다. 하나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토대가 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역할을 진실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익명 취재원 사용을 반대하는 관점에서는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을 경우, 저널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요

1) “The job of journalist...is to find out what really happened. When you are reporting on inside(sic) the White House, the Supreme Court, the CIA, or the Pentagon, you tell me how you're going to get stuff on the record.”(Duffy, 2014, p. 256에서 재인용)

소인 진실성(truthfulness)을 의심받으며, 결과적으로 뉴스 이용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한다(Hale, 1984; Sternadori & Thorson, 2009). 반면, 익명 취재원 사용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익명 취재원의 도움 없이는 보도되지 못하는 정보들 - 공공 부문 내부 고발 등 - 이 공개돼 결과적으로 건전한 공론장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Blankenburg, 1992). 이 때문에 익명 취재원 사용 관행의 두 측면은 모두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이며, 이 둘 중 어느 것에 우위를 두느냐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Duffy & Freeman, 2011).

익명 취재원을 둘러싼 상반된 견해 속에서 미국에서는 수 십 년 전부터 익명 취재원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과 제자 지침에 대해 고심해왔다(Duffy, 2014). 즉, 익명 취재원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기사에 활용할 것인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익명 취재원 사용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줄이려 한 것이다(Boeyink, 1990; Duffy & Freeman, 2011). 하지만, 국내에서는 익명 취재원 사용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국내 언론사 중 익명 취재원 사용에 대한 '취재윤리강령'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례는 소수에 그치며 이마저도 선언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김창숙, 2019; 박재영, 2007). 왜냐하면, 국내 학계에서 진행된 미국 등 해외 유력 언론과의 익명 취재원 사용 현황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익명 취재원 사용이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이다(김경모 등, 2020). 아울러, 익명 취재원에 대한 학계 연구도 국내 기사에 얼마나 많은 익명 취재원을 포함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박재영·이원수, 2007; 박재영, 2014; 이근호·정완규, 2009; 이재경, 2001) 익명 취재원 사용의 이유를 탐구한 연구(남재일, 2006; 이윤희·조연하, 2017) 등에 머물러 있어 대안 탐색을 위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기사를 대상으로 익명 취재원 사용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나아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 기사에서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제안된 가이드라인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알아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익명 취재원 사용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을 검토하고,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익명 취재원 사용 지침이 무엇이며, 국내 기자들은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 이러한 기준을 얼마나 준수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기사 주제에 따라 익명 취재원 사용의 빈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Blankenburg, 1992),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정치 기사로 정했다. 정치 기사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취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을 뿐 아니라, 익명 취재원 사용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오해정·김경모, 2020; 홍연희, 2015; Martin-Kratzer & Thorson, 2007; Purvis, 2015). 갠즈(Gans, 1979)가 지적했듯, 언론인들은 믿을 만한 취재원으로 정부 관료, 유력 정치

인, 기업인 등을 선호하며 정치 기사의 경우 특종을 얻기 위해 영향력 있는 인물에 접근,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취재원 의존성'을 보인다(Bennett, 2009/2009). 실제, 베넷과 로렌스(Bennett & Lawrence, 2006)는 주요 언론 매체들이 정치 이슈를 보도할 때, 정부 관료나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또한, 익명 보도는 정치 기사뿐 아니라 저널리즘 전체에 대한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김재영, 2006). 특히 한국에서 뉴스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된 만큼(박아란·이소은, 2020), 정치 기사를 토대로 익명 취재원의 문제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국내 언론사들이 정치 기사에서 익명 취재원을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국의 뉴욕타임스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비교분석 연구는 한 사회의 맥락 속에서 찾기 어려운 행동 유형이나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Blumler et al, 1992). 이 연구는 익명 취재원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내 익명 취재원 사용 관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연구뿐 아니라 실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1) 정치 기사와 취재원, 그리고 익명 취재원의 문제

취재원은 기사의 토대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저널리즘에서는 기사의 정확성(accuracy)과 진실성(truthfulness)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인 취재원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고 충실하게 밝힐 것을 요구해왔다. 다시 말해, 취재원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뉴스생산관행은 뉴스에 쓰여진 내용이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장치로서, 수용자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Boeyink, 1990; Sternadori & Thorson, 2009).

특히, 정치 기사의 경우 다른 주제에 비해 취재원이 갖는 권력이 비대칭적으로 크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돼왔다(이준웅·양승묵·김규찬·송현주, 2007; 정필모, 2015; Bennett, 2009/2009; Bernays, 1928/2009; Lewis & Reese, 2009). 언론사 측에서 볼 때 정책당국, 공직자, 정치인 등은 영향력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취재원이기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Brown, Bybee, Wearden, & Straughan, 1987; Sigal, 1973). 정치인 측에서도 언론과의 접촉은 개인 또는 조직의 주장과 이념을 세상에 알리는 수단이다. 이

에 정치인은 언론을 매개로 자신이 가진 정보를 세상에 알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송상근, 2016).

문제는 정치 취재원이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데서 생긴다. 기자는 정치인에게 기사거리를 기대하고, 정치인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류하는 힘을 통해 정치 기사를 효과적으로 검열할 수 있다(Bernays, 1928/2009). 이처럼 정치 엘리트에 호의적인 보도 관행으로 인해 학자들은 세상에 대한 정치인의 관점과 입장이 기자의 '렌즈'를 통해 전달(transmission), 구체화(reification), 자연화(naturalization)의 과정을 거쳐 '프레임'된다고 보았다(Lewis & Reese, 2009). 베넷(Bennett, 2009/2009) 역시 인덱싱 이론(indexing theory)을 제시하며 정치 보도의 경우 유력 취재원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는(indexed)"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정치인이 정치 기사에서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기자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실명 보도의 필요성을 역설(逆說)한다. 실명 보도는 취재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온전한 책임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정치 기사에 익명 취재원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해정·김경모, 2020; 홍연희, 2015; Martin-Kratzer & Thorson, 2007; Purvis, 2015). 1994-2004년 조선일보 1면 기사에서 익명 취재원이 가장 많이 발견된 주제는 정치(61.11%)였으며(홍연희, 2015), 2018년 KBS 기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사회(41.9%)에 이어 정치(32%)분야에서 익명 취재원이 많았다(오해정·김경모, 2020).

저널리즘에서 익명 취재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뉴스 이용자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깊다. 실명 취재원은 기자가 작성한 보도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점검받는 기체로서 작용한다. 보잉크(Boeyink, 1990)는 "만일 취재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독립적으로 그 정보에 대한 사실을 확인, 검증할 수 있다²⁾"(p. 235)고 말했다. 다시 말해, 취재원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암묵적으로 해당 정보는 사실이며, (의심스럽다면) 직접 확인해보라는 암묵적인 약속이라는 것이다(Duffy & Freeman, 2011, p. 300).

또한, 익명 취재원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익명 취재원의 동기(motive)를 우려한다. 하인맨(Hainman, 1998)은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스피너더터가 쉽게 저널리즘을 조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터크먼(Tuchman, 1978)이 지적했듯, 익명 취재원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익명성에 몸을 감춘 뒤 여러 정책에 대해 띄우는 애드벌룬 - 즉, 정책

2) "If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is provided, that information can be independently verified by others."

을 슬쩍 흘린 뒤 이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알아보는 것으로 악용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윌킨스(Wilkins, 1997)는 취재원이 신체적 혹은 감정적 위협이 있을 경우 특히 범죄 피해자, 어린이 등 취재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할 경우, 전통적으로 비밀리에 작동해온 대법원이나 군의 기밀 등을 취재할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인해 언론이 단순한 전달자,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 언론은 정당과 후보의 ‘아님말고’식의 비방, 폭로전을 돕는 조력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이준웅·양승목·김규찬·송현주, 2007). 현장 취재기자도 익명 인용으로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을 방기하는 측면을 인식하고 있다. 취재기자였던 정필모(2015)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출입처를 취재하는 기자 일수록 익명을 전제로 취재하고, 익명에서 의도된 정보나 틀린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재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익명 취재원의 발언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용자들의 신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05년 4월 미국의 뉴스위크는 ‘군 관계자들(military sources)’이라는 익명 취재원을 토대로 쿠바의 미국 관타나모 캠프(Guantanamo Bay Camp)에서 미국의 심문관이 의도적으로 코란을 훼손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이슬람 세계를 자극했고, 시위 참가자 중 최소 16명이 사망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지만, 보도 2주 뒤 뉴스위크는 “여전히 기사가 사실인지를 확인 중(still trying to ascertain whether the report was true)”이라고 보도한 데 이어, “현재 익명 취재원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Seelye & Lewis, 2005). 더구나 ‘관계자들’이라고 기사에 적은 것과는 달리, 담당 기자가 접촉한 취재원은 한 명뿐이었다. 이처럼 익명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한 부정확한 보도는 뉴스 미디어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2) 익명 취재원 사용을 위한 현실적 방안 제시

이에 비해, 익명 취재원의 사용에 허용적인 관점은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적 윤리관(the ethical philosophy of utilitarianism)에 기초한다. 인간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것이 가져올 전체 행복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인간의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토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Mill, 1991).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처럼 익명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가 사회에 기여한다면 그 자체로 긍정적이라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현장의 기자들은 물론 일부 학계에서도 익명 취재원의 불가피성과 유용성을 강조해왔다(Blankenburg, 1992). 블랭켄부르크(1992)는 익명 취재원의 효용성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특정 주제의 기사에서는 익명 취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과 둘째, 기사에 보다 폭넓은 견해를 전달함으로써 풍성한 공론장(public sphere)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첫 번째 주장의 근거로 1990, 1991년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LA타임스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익명 취재원은 1991년 걸프전(Gulf War)에서 유의하게 많았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전쟁 관련 기사에서는 익명 취재원 포함 기사가 37.5%였지만, 그 외 기사에서는 24.6%에 머물렀다. 또한 비판적인 논조 기사 중 42%, 그 외 기사 29.6%에서 익명 취재원이 사용되었다며 익명 취재원 사용을 금지할 경우 비판적인 기사가 줄어들어 그만큼 다양한 관점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 취재원 사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팽배한 가운데 미국에서 익명 취재원 사용의 허용 정도는 저널리즘의 성과와 시대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Duffy, 2014). 더피(2014)는 1907년 이후 저널리즘 교육용 교과서 47권, '전문 언론인 협회(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 SPJ)'의 윤리강령 변화,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와 아메리칸 저널리즘 리뷰를 대상으로 익명 취재원 허용에 대한 가이드를 검토하고, 같은 기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AP의 취재윤리강령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의 경우 1950, 6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익명 취재원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1970년대 익명 취재원을 토대로 한 워터게이트 특종을 기점으로 느슨해졌다고 밝혔다. 1980, 1990년대에 신문이나 방송에 게재된 기사를 분석한 연구결과도 이를 지지했다(Menz, 1989; Wulfemeyer & McFadden, 1986). 1982년 미국의 CBS, NBC, ABC 방송 뉴스를 분석한 결과, 한 건 이상의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기사 비율이 약 55%에 이르렀다(Wulfemeyer & McFadden, 1986). 신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12개 일간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기사 비율이 약 33%였으며(Culbertson, 1978) 미국의 3대 일간지를 분석한 블랭켄부르크(Blankenburg, 1992) 연구에서는 국제 뉴스인지, 국내 뉴스인지에 따라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기사의 비중이 23-30%에 이르렀다.

그러나 익명 취재원 사용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면서 워싱턴포스트의 또 다른 역사적 오보인 재넷 쿡 사건으로 이어졌고 이는 익명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더피(Duffy, 2014)는 이 때문에 2000년대 후반에는 뉴욕타임스 등 많은 언론사들이 익명 취재원 사용에 대한 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사에서 익명 취재원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1996-2010년 발행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익명 취재원 사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이슨 블레이어 사건 이전 0%에 가까웠던 익명 취재 이유 적시가 2006년 뉴욕타임스 최고 87%, 2007년 워싱턴포스트 75%까지 증가했다(Gladney, Shapiro & Ray, 2013).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취재 현장과 학계에서는 익명 취재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잉크(1990)는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 준수 사항으로 1) 익명 취재원은 다른 취재 방법이 없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으로 사용할 것, 2) 익명 취재원의 신분과 익명 취재원으로 다룬 이유를 뉴스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익명 취재원의 동기와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어야 할 것, 그리고 4) 익명 취재원의 발언에 대해 독립적으로 사실 확인할 것 등 7가지를 제안했다. AP도 2009년 익명 사용에 대한 규칙을 수정해, 1) 취재원에게 익명을 허용한 이유를 설명하고, 2) 취재원이 정보를 제공하는 동기를 설명하고, 3)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제공하고, 4)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는 상사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했다. 더피와 프리먼(2011)은 익명 취재원 사용 지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익명 취재원 사용의 지침을 제시하고, 정부 관계자로부터 얻은 일상적 정보,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 등에 대해서는 익명 취재원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³⁾

학계와 현장에서 제시한 익명 취재원 사용의 지침을 종합하면 1) 취재원에게 익명을 허용한 이유를 최대한 독자에게 설명하라, 2) 취재원의 동기를 최대한 검증하라, 그리고 3) 익명 취재원의 발언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사실을 검증하라 등임을 알 수 있다.

3) 국내에서의 익명 취재원 연구

미국과 달리 국내 익명 취재원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했다. 2000년대 연구들은 외국의 주요 언론사와 비교해 국내에서의 익명 취재원 사용 수준은 어떠한지 내용분석을 통해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박재영·이완수, 2007; 박재영, 2014; 이진호·정완규, 2009; 이재경, 2001). 최근에는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익명 취재원 사용 관행의 이유를 조사하거나(남재일, 2006; 이윤희·조연하, 2017), 익명 취재원 사용의 문제점(최윤규, 2020), 그리고 익명 취재원 사용이 뉴스 이용자의 뉴스 미디어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기명, 2020) 등으로 연구 범위가 확대됐다. 익명 취재원 사용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이재경·김진미(2000)는 익명 취재원을 포함한 기사의 비율이 26.2%라고 밝혔으며, 익명 취재원을 포함한 기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최근 연구 결과(김경모 외, 2020)에서는 국내 방송사 뉴스의 38.9%에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숫자는 최근 수 십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박재영 등, 2014). 박재영 등(2014)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동안, 5년 단위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의 익명 취재원 사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언론사별로 1990년대 초반 2.5명대에서 2012년 2.4명이었다.

3) 구체적인 가이드는 <부록 II>에 상세히 안내하였다.

국내 학계 연구 중 대다수는 익명 취재원 사용의 부정적 측면을 다뤘다. 주로 익명 취재원 사용의 부정적 관행과 관련된 것으로, 기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쓸 때 익명 취재원의 발언처럼 보도하는 관행(남재일, 2006; 박대민, 2015)을 지적하거나, 언론이 자신들의 논리를 강조하고자 익명 취재원을 활용한다는 결과(최윤규, 2020)를 제시했다. 이처럼 익명 취재원 사용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국내 언론사도 익명 취재원 사용에 대한 규칙을 구체화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취재 윤리강령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경우 1) 의견이나 추측이 아닌 정보로서 뉴스 보도에 필수적인 경우, 2) 익명을 요구한 출처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입수할 수 없을 경우, 3) 출처를 신뢰할 수 있을 경우, 4) 실명이 드러나면 각종 위해나 신분상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경우, 5) 국가 안보 등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익명 취재원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겨레도 1) 의견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실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취재원이 익명을 전제로만 말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정보를 입수할 다른 방법이나 경로가 없다고 판단될 때, 2) 취재원의 실명이 드러나면 각종 위해나 신분상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범죄의 피해자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등을 제외하고는 익명 취재원을 표기할 때 그 이유를 기사에 밝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저널리즘 현장은 규범적으로 익명 취재원 사용을 금지하는 윤리강령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 취재원 사용의 관행을 조사한 연구에서 10개 주요 일간지 기자들 중 “최근 한 달 사이 적절하지 않은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86.4%에 이르렀으며, “실명을 밝혀도 될 만한테 관행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응답도 62.9%에 이르렀다(조동시·양승혜, 2006). 최근의 연구결과도 유사하다. 이윤희와 조연하(2017)가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의 기자 15명을 심층 면접한 연구에서도 기자들은 정보 확보를 위한 기능적 동기뿐 아니라 취재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동기, 그리고 취재 및 보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동기에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김창숙(2020)의 연구에서는 취재기자들이 취재원의 사생활 보호- 신상 노출, 신체적 위협, 재산상 손해, 사회적 지위 상실 등 - 뿐 아니라 이후의 관계를 위해 익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국내 정치 기사의 익명 취재원 사용 관행이 미국 뉴욕타임스와는 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미국의 경우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더라도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용 이유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는 윤리강령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며,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Gladney, Sapiro, & Ray, 2013).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주요 언론과 학자가 제시하는 익명 취재원 사용에 대한 주요 윤

리강령을 토대로 1) 기사를 작성하며 취재원의 실명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익명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2) 익명 취재원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다고 기자가 판단한 근거로서 익명 취재원의 신분이나 경력에 대해 설명하는지 등의 관행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익명 취재원의 사용 수준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 국내 주요 언론사의 정치 기사에 사용된 익명 취재원의 숫자와 비중은 미국 뉴욕타임스와 비교해 어떠한가?

또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듯, 미국 뉴욕타임스에 비해 국내 신문사의 정치 기사에는 익명 취재원 사용의 이유를 밝히는 정도와 취재원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이 미약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를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1.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비해 국내 주요 정치 기사는 익명 취재원 사용 이유를 설명하는 빈도가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비해 국내 정치 기사는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빈도가 더 낮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기사에서는 익명 취재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익명 취재원에 대한 다양한 표기 방식을 분석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탐색적 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연구문제 2. 국내 주요 언론사 정치기사에 사용된 익명 취재원에 대한 표기 실태는 어떠한가?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한국 정치 기사의 익명 취재원 표기 관행을 선진 언론과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한국 정치 기사 익명 취재원 현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비교 언론학적 시각을 도입하면 연구

자는 한 사회의 문맥 속에서만 관찰했을 때 찾아내기 어려운 사회적 행동 유형이나 특징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Blumler et al, 1992). 이에 국내 언론의 경우 발행부수와 유료부수⁴⁾, 정파성 등을 고려하여 6개 국내 종합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를, 선진 언론으로는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뉴스 주제 중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으로 인해 익명 취재원이 많이 등장하는 정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실제 한국 조선일보 1면을 분석한 홍연희(2015)에 따르면, 다른 주제에 비해 정치 기사에 익명 취재원이 등장하는 비율이 61%로 가장 많았고, 이는 미국에서도 유사했다(Purvis, 2015).

국내 기사의 경우 각 신문의 종합면과 정치면에 게재된 대통령과 국회(정당) 관련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종합면은 1면부터 시작해 그날의 중요한 기사들이 게재되는 집합적 공간으로, 신문사의 편집 방향과 특성을 반영하는 의미있는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이건호·정원규, 2009). 일반적으로 정치 기사를 분석할 때 정치면이나 1면에 게재된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연구진은 분석 대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정치면과 종합면에 있는 대통령과 국회(정당) 관련 모든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분석 기간은 각국 대통령 임기 3년차인 2019년 9월1일~2020년 8월31일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집권 1년차는 ‘허니문’기간으로, 4년차 이후는 ‘레임덕’ 기간으로 보는 것을 고려하면, 일상적인 정치 뉴스를 수집하는데 집권 3년차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2020년 하반기에 실시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의 주요 정치 이벤트를 피하면서 정치 보도의 일반적인 패턴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이 시기를 표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 ABC 협회가 발표한 2020년도(2019년분) 일간신문 상위 10개사 인증부수는 다음과 같다.

	Newspaper	Circulation	Paid copies	Note
1	Chosun Ilbo	1,212,208	1,162,953	
2	Donga Ilbo	925,919	733,254	
3	JoongAng Ilbo	861,984	674,123	
4	Maeil Business Newspaper	706,760	554,228	Business Newspaper
5	Farmers Newspaper	430,518	422,282	Issued 3 times a week
6	Korea Economic Daily	526,908	355,388	Business Newspaper
7	Hankyoreh newspaper	205,748	192,853	Business Newspaper
8	Munhwa Ilbo	195,068	181,108	
9	Hankook Ilbo	219,672	172,577	
10	Kyunghyang Newspapaer	190,677	165,512	

1) 표집 방법

기사는 분석 기간 동안 주 구성 표집으로, 매달 2일씩 총 24일, 4주를 구성해(일요일 제외) 표집했다. 예를 들어 9월 첫 주 월요일, 9월 둘째 주 화요일, 10월 셋째 주 수요일, 10월 넷째 주 목요일 등이다. 이렇게 월, 주, 요일을 모두 회전시켜 <Table 1>의 날짜 기사를 표집했다.

Table 1. The Result of Constructed Week Sampling

Month	Week	Day	Date	Month	Week	Day	Date	Month	Week	Day	Date
9	1	Mon	Sept. 2	1	1	Wed	Jan. 1	5	1	Fri	May 1
9	2	Tue	Sept. 10	1	2	Thur	Jan. 9	5	2	Sat	May 9
10	3	Wed	Oct. 16	2	3	Fri	Feb. 14	6	3	Mon	Jun. 15
10	4	Thur	Oct. 24	2	4	Sat	Feb. 22	6	4	Tue	Jun. 23
11	1	Fri	Nov. 1	3	1	Mon	Mar. 2	7	1	Wed	Jul. 1
11	2	Sat	Nov. 9	3	2	Tue	Mar. 10	7	2	Thur	Jul. 9
12	3	Mon	Dec. 16	4	3	Wed	Apr. 15	8	3	Fri	Aug. 14
12	4	Tue	Dec. 24	4	4	Thur	Apr 23	8	4	Sat	Aug. 22

2) 기사 추출

국내 6개 주요 신문 기사는 스크랩마스터를 이용해 구성된 날짜의 종합면과 정치면에서 추출했으며, 뉴욕타임스 기사는 미국판⁵⁾ 뉴욕타임스 홈페이지(www.nytimes.com) '정치(politics)' 섹션에서 수집했다. 이후, 이 연구가 대통령과 국회 기사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연구자가 일일이 기사를 읽고 검토하여 국회와 대통령 관련 기사를 추출했다. 이 과정에서 제외된 정치 관련 기사들은 외교, 국방, 통일, 행정자치, 지방정치 등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6개 신문사 정치기사 975개(89.6%), 뉴욕타임스 정치기사 113개(10.4%) 등 총 1,088개를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Table 2. The Subject of Analysis and Analysis Periods

Subject of analysis	(cases, %)	
	Korea (975, 89.6)	Kyunghyang(142, 13.1), Dong-A(180, 16.5), Chosun(236, 21.7), JoongAng(110, 10.1), Hankyoreh(143, 13.1), Hankook (164, 15.1)
(1088, 100)	the United States (113, 10.4)	New York Times (113, 10.4)
Analysis periods		September 1, 2019 ~ August 31, 2020

5) 뉴욕타임스 홈페이지는 국내용(U.S.), 해외용(international, canada, español, 中文)로 구분되어 있다.

3) 익명 취재원 관련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1) 익명 취재원

선행연구(김경모 외, 2018; 오해정·김경모, 2020)에 기초해 취재원 실명 수준은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의 신원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정도'로 정의했다. 분석을 위해 '익명', '준실명', '실명', '취재원 없음'으로 유형화했다. '실명'은 사람 취재원의 이름이 모두 표기된 경우, 자료 취재원의 전체 명칭이 표기된 경우, 인터넷 모바일 ID 등 취재원의 ID가 정확하게 표기된 경우, 조직 및 기관명이 정확하게 표기된 경우 등이다. '준실명'이란 해당 취재원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경우로, 주로 한 개인이 직책과 함께 표기된다. '익명'은 '준실명' 정도의 정보도 없는 경우로, 복수형, 집합명사, 익명의 조직 취재원도 여기에 해당한다. 익명 취재원의 경우 익명으로 쓰인 내용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익명이 쓰이는 여러 가지 방식을 추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2) 익명 사용 이유

기사 내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①단순히 익명을 요청한(즉, 익명을 요청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음) ②불이익 관련 요청한 ③기자의 판단으로 생명 혹은 재산상의 위험이 있음 ④기타 ⑤없음으로 구분했다.

(3) 익명 취재원에 대한 설명

해당 취재원의 발언을 믿을 만한 것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지 예를 들어,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증언을 들은", "CIA에서 오래 근무한", "해당 후보를 잘 알고 있는" 등이 있는지를 ①있음 ②없음으로 구분해 코딩했다.

(4) 익명 취재원 표기법 분류

국내 기사에 사용된 익명 취재원 사용 사례를 대상으로 익명 취재원에 대한 표기법을 11가지로 분류했다. 국내에서는 익명 취재원 표기법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1차적으로 정치기사에 사용된 익명 표기법을 모두 오픈 코딩한 뒤, 이를 토대로 유사한 표기법끼리 묶어 익명 취재원 표기법을 10개(기타 포함 11개)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청와대, 외교부 등 특정 부처 및 정당의 취재원을 익명으로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 인사 등을 자주 사용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몇 번이나 당선되었는지(초선, 재선, 3선, 다선 등) 혹은 비례대표인지, 어느 지역인지(수도권의

한 의원, 지역의 재선 의원, 영남의 한 의원 등), 지위(원내 지도부, 최고위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다소 예외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국회 교육위, 법사위 등 소속을 밝히기도 하였다. 계통을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예를 들어, 친문, 친박, 친 안철수, 친박원순, 친유승민 등이다. 혹은 이러한 익명의 표현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수도권, 재선의원, 특정 지역의 3선 의원 등이다. 또한 부처와 관련된 표현은 일관되게 교육부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혹은 교육부 측/ 국방부 측으로 표기했으며, 부처의 경우 가끔 ‘한 국장급 관계자’와 같이 직급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오픈코딩의 분류를 토대로 10개 항목으로 구분한 뒤, 익명 취재원 표현에 나온 모든 단어를 코딩했다(있음 1, 없음 0). 하나의 취재원에 익명 관련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야당의 한 관계자”라는 표기에서는 ‘야당’, ‘한’, ‘관계자’를 각각 ‘있음’으로 코딩하고, 나머지 항목에는 ‘없음’으로 코딩했다. 구체적인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관계자 ②한, 다른, 일부 (한 의원, 일부 의원, 다른 의원들) ③특정 정당명 ④여당(여권)의원/ 야당(야권)의원 ⑤측근, 핵심, 친문, 친박, 친 안철수계, 측, 쪽, 계 등 ⑥부처이름(교육부), 의장실 조직명(선관위, 청와대 등), 경찰청, 검찰 ⑦초선, 재선, 다선, 현역, 중진 ⑧지역 이름(수도권, 지방의, 영남의) ⑨~에선(국방부에선, 경제계에선 등) ⑩국회 소속 위원회나 직위(원내 대표 / 법사위 소속 등) 혹은 부처소속 직위(국장, 부장 등) 혹은 전직 직업(전 판사출신 / 검사출신 / 지도부 / 현 직업) ⑪ 기타

코딩은 언론학을 전공한 교수 2명과 박사 1명 총 3명이 실시했다. 두 차례의 코더 훈련 후에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측정하기 위해 표집기사 중 10%이상인 120개의 기사를 추출해 코딩했다. 크리펜도르프 알파(Krippendorff's alpha)값 분석 결과, 익명 취재원은 .82 익명 사용 이유는 .96, 익명 취재원에 대한 설명은 .90, 익명 취재원 표현에 등장한 표기법은 항목별로 .66 ~ .84였다.⁶⁾

6) 구체적 신뢰도 값은 다음과 같다: ① 관계자 .72 ②한, 다른, 일부 (한 의원, 일부 의원, 다른 의원들) .78 ③특정 정당명 .84 ④여당(여권) 의원/ 야당(야권) 의원 .66 ⑤측근, 핵심, 친문, 친박, 친 안철수계, 측, 쪽, 계, .79 ⑥부처 이름 (교육부), 의장실 조직명(선관위, 청와대 등), 경찰청, 검찰 .80 ⑦초선, 재선, 다선, 현역, 중진 등 .82 ⑧지역 이름(수도권, 지방의, 영남의) .84 ⑨~에선 (국방부에선, 경제계에선 등) .78 ⑩국회 소속 위원회나 직위 (원내 대표 / 법사위 소속 등) 혹은 부처소속 직위(국장, 부장 등) 혹은 전직 직업(전 판사출신/검사출신/지도부/현 직업) .71 ⑪기타 .84.

4. 연구결과

국내 주요 신문사와 미국 뉴욕타임스의 정치 기사에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 제공하는 정보를 분석하기에 앞서 익명 취재원 사용 정도를 분석했다(연구문제 1). 그 결과, 전체 기사의 절반 가량에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기사는 전체의 45.9%인 499건(국내 444건, 45.5%, 뉴욕타임스 55건, 48.7%),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지 않은 기사는 54.1%인 589건(국내 531건, 54.4%, 뉴욕타임스 58건, 51.3%)이었다(〈Table 3〉 참조).

Table 3. The Comparisons of the Number of News Articles between Korean Newspapers and the New York Times Based on the Number of Anonymous Sources

(unit: frequency)

The Number of Anonymous Sources used in an Article	Korean Newspapers(975)						New York Times (113)
	Kyungnyang (142)	Dong-A (180)	Chosun (236)	JoongAng (110)	Hankyoreh (143)	Hankook (164)	
0	90	101	117	49	76	98	58
1	32	39	62	31	44	36	26
2	9	27	32	17	12	20	13
3	7	6	11	7	6	7	5
4	2	5	6	1	4	2	4
5	2	1	4	3	0	1	3
6	0	1	1	1	1	0	1
7	0	0	2	1	0	0	1
8	0	0	1	0	0	0	2
Total	0.63	0.79	0.98	1.07	0.76	0.67	1.12
	0.82						

또한 국내와 미국의 기사당 익명 취재원 숫자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국내는 정치 기사 1건당 평균 0.82건, 뉴욕타임스는 1건당 평균 1.12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신문의 경우 익명 취재원이 없는(0개) 기사가 531건, 1개 244건, 2개 117건, 3개 44건, 4개 20건 등이었다. 아울러, 기사 1건당 평균 취재원 수는 뉴욕타임스 7.49개, 국내 3.54개로 뉴욕타임스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해, 전체 취재원 중 익명 취재원의 비중도 비교했다(〈Table 4〉 참조). 그 결과, 전체 취재원중 익명 취재원의 비중은 뉴욕타임스 14.95%, 국내 23.16%로, 취재원의 숫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국내 정치 기사에서 익명 취재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Comparisons of the Number of Anonymous Sources between Korean Newspapers and the New York Times

(unit: frequency)

	Average number of news sources per article	Average number of anonymous sources per article	The percentage of anonymous sources (%)	Minimum	Maximum
Korean Newspapers (975)	3.54	0.82	23.16	0	8
New York Times (113)	7.49	1.12	14.95	0	8
	$t(1086) = 15.19, p < .001$		$t(1086) = 2.43, p < .05$		
Kyunghyang (142)	3.20	.63	19.69	0	5
Dong-A (180)	3.49	.79	22.64	0	6
Chosun (236)	4.02	.98	24.38	0	8
JoongAng (110)	4.33	1.07	24.71	0	7
Hankyoreh (143)	3.40	.76	22.35	0	6
Hankook (164)	2.77	.67	24.19	0	5
	$F(5, 969) = 8.89, p < .001$		$F(5, 969) = 3.18, p < .01$		

다음으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인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의 표기 관행을 분석했다.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 실명을 밝힐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지와 익명 취재원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을 만한 경력이나 위치에 있는지를 뉴스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은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기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표기 관행에 대한 분석에는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기사 499건만을 포함시켰다. 499건의 기사에 사용된 익명 취재원 표기 사례는 총 925건이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표기 관행을 분석했다.⁷⁾ 총 925건 가운데 국내 언론사에서 사용된 익명 취재원 표기 사례는 798건, 뉴욕타임스가 127건이었다.

첫 번째로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국내 언론사에 비해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이유를 더 빈번하게 밝혔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연구가설 1). 이 연구에서는 취재원을 익명으로 쓰는 이유를 1) 단순히 “익명을 요청한”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2) 안전 혹은 경제적 불이익 등에 따른 요청이 있었는지 3) 기자가 판단해 취재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는지, 그리고 4) 기타 등으로 구분해 분석했으며 그 결과, 이유를 설명한 사례는 전체 익명 취재원 표기 925건

7) 예를 들어, 경향신문의 경우 이 연구에 포함된 기사는 142건이지만, 익명 취재원이 사용된 기사는 총 52건이며 이 52건의 기사에 총 89번의 익명 취재원이 등장한다. 따라서 익명 취재원 표기 관행에 대한 분석은 익명 취재원이 사용된 89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Table 5〉 참조). 또한 조선일보 119건, 중앙일보 61건, 동아일보 79건, 한겨레 67건, 한국일보 66건, 뉴욕타임스 55건 등의 기사에서 익명 취재원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숫자는 〈Table 3〉에서 기사당 익명 취재원 숫자가 0인 기사를 제외한 모든 기사를 합친 숫자를 같다.

중 20건(2.2%)에 불과했다.⁸⁾ 이 가운데 ‘익명을 요청한’은 16번, 불이익 관련 요청이 있었다는 4번 사용됐다. 기자의 판단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언급한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한편, 국내 언론사와 뉴욕타임스를 비교한 결과 국내 언론사는 익명 취재원 798건 중 10개 (1.25%)에서 이유를 설명했으며 뉴욕타임스는 127건 중 10건(7.87%)에서 이유를 설명했다. 익명 취재원 사용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한 빈도가 너무 적기는 하지만, 뉴욕타임스가 국내 언론사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뉴욕타임스의 경우 익명 취재원 사용 이유를 밝힌 사례가 이 연구에서 입증된 숫자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뉴욕타임스의 경우 익명 취재원으로만 기사를 작성할 경우, 기사 도입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 뒤 개별 익명 취재원 표기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기사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 2019년 9월9일자 “미국의 CIA 정보원이 수십 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기밀을 빼내왔다”(CIA Informant extracted from Russia had sent secrets to US for decades) 기사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어서 대부분 취재원을 익명으로 다뤘는데, 기사의 도입에서 “기자들이 몇 달 동안 익명을 전제로 전, 현직 정보당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화했다”고 밝히고 있다.⁹⁾ 따라서 <연구가설 1>은 대체로 지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5. The Comparisons of Instances with Reason Cited for an Anonymous Source between Korean Newspapers and the New York Times

(unit: frequency)

	Korean Newspapers(798)						New York Times (127)	Total (925)
	Kyunghyang (89)	Dong-A (142)	Chosun (231)	JoongAng (118)	Hankyoreh (108)	Hankook (110)		
Requesting anonymity	0	1	1	4	0	3	7	16
Requests concerned about disadvantages	0	0	1	0	0	0	3	4
Protection at the discretion of the reporter	0	0	0	0	0	0	0	0
Other	0	0	0	0	0	0	0	0
Total	0	1	2	4	0	3	10 (7.87%)	20 (2.2%)

8) 익명 사용의 이유를 밝힌 기사의 건수가 적어 통계분석을 하지 않음.

9) This article is based on interviews in recent months with current and former officials who spoke on the condition that their names not be used discussing classified information

두 번째로 이 연구는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국내 기사보다 뉴욕타임스가 더 많이 제공할 것으로 예측했다(연구가설 2). 분석 결과, 익명 취재원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기사 비중에서 두 국가의 언론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1, 925) = 97.37, p < .001$). 즉, 국내에 사용된 익명 취재원 798건 중 익명 취재원에 대한 경력, 경험 등을 제시한 사례는 60건(7.5%)이었으나 뉴욕타임스의 경우 전체 127건 중 48건(37.8%)이 익명 취재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었다.

Table 6. The Comparisons of Korean Newspapers and the New York Time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nonymous Sources

(unit: frequency, %)

	Korean Newspapers	New York Times	Total
Provided	60 (7.5)	48 (37.8)	108 (11.7)
None-provided	738 (92.5)	79 (62.2%)	817 (88.3)
Total	798 (100.0)	127 (100.0)	925 (100.0)

$X^2(1, 925) = 97.37, p < .001$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정보도 뉴욕타임스가 국내 신문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었다. 2020년 8월14일자 “Trump Announces His ‘Opening the Country’ Council” 기사는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서 국가 봉쇄를 해제하는 방안을 자문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문단 중 일부에게 정부의 발표 전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이 모임에 참석했던 경제계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일부 기업의 지도자들(some business leaders)’과 같이 익명으로 다루면서, 해당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대통령의 자문단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 중 적어도 한 사람, 백악관의 노여움을 살까봐 두려워서 자신을 밝지 말도록 요청한”이라고 상세히 안내했다.¹⁰⁾

Table 7. The Comparisons of Korean Newspaper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nonymous Sources

(unit: frequency, %)

	Kyunghyang (89)	Dong-A (142)	Chosun (231)	JoongAng (118)	Hankyoreh (108)	Hankook (110)	Total (798)
Provided	5 (5.6)	9 (6.3)	9 (3.9)	6 (5.1)	19 (17.6)	12 (10.9)	60 (7.5)
None-provided	84 (94.4)	133 (93.7)	222 (96.1)	112 (94.9)	89 (82.4)	98 (89.1)	738 (92.5)

$X^2(5, 925) = 23.69, p < .001$

10) At least one person on the president’s list, who asked not to be identified for fear of angering the White House, said that no request had been made to join the list and that there had been no advance notice of an announcement.

한편, 국내 언론사별로는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비교적 익명 취재원에 대한 설명을 많이 제공한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이 익명 취재원에 대한 설명 제공에 인색해 언론사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5, 925) = 23.69, p < .001$). 예를 들어 중앙일보의 경우, 총 118건의 익명 취재원 사용 중 6건의 익명 취재원에 대해 경력 등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이낙연 전 총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조국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막걸리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사람을 '회동 참석자'로 설명한 것이었다(2019년 10월16일). 이처럼 국내 언론의 경우 익명 취재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뉴욕타임스에 비해 매우 간단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국내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정치 기사에 사용되는 익명 취재원의 표기를 유형별로 분석했다(연구문제 2). 익명 취재원 표기법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익명 표기 유형을 총 10개로 구분한 뒤, 개별 익명 취재원 표기가 10개 유형을 얼마나 포함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한 야당 의원"이라는 표기에서는 지역, 한, 야당 등 3개 유형을 포함한 것으로 보였다. 분석 결과, 국내 정치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익명 표기법은 '관계자'로 총 798건 중 364건(45.6%)이었다. 국내 정치기사에서 '관계자'란 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보니, 부적절한 단어 뒤에도 사용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당명 뒤에 '관계자'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물론이고, "여권 관계자" "야당/여당 관계자"는 물론 심지어 "정치권 관계자"(조선일보 2019년 10월16일자)도 사용되었다.

두 번째로 빈번하게 사용된 익명 표기법은 '한', '일부', '다른' 등으로 '청와대의 한 의원' 혹은 '청와대의 또다른 의원' 등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 256건(32.1%)이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처럼 특정 정당명을 사용한 것으로 총 207건(25.9%)이었다. 또한, 정당명도 없이 여당 의원, 여권 의원 등으로 사용한 익명 표기 건수는 110건(13.8%)이었다. 한편, 개인의 경력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 국회 소속 위원회를 밝히거나, 부처에서의 직위, 혹은 전직 직업을 소개한 사례는 총 83건(10.4%)이었다.

국내 언론사별로도 자주 사용하는 익명 표현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관계자라는 표현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언론사는 동아일보(64.8%)와 경향신문(64.0%)이었으며, 한겨레가 가장 적게 사용했다(43.5%). 여당, 야당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한 언론사는 동아일보(23.2%)와 한겨레(25.9%), 그리고 측근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한 언론사는 한국일보(20.9%)였다. 조선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한 언론사는 한겨레(17.6%), 지역 표현은 한국일보(9.1%)였다. 익명 취재원의 소속, 지위, 전직 등의 담은 표기법의 경우 중앙일보(22.0%)와 한겨레(15.7%)가 많았으며, 동아일보(4.1%)와 경향신문(2.2%)이 가장 적었다.

Table 8. Descriptive Terms of Anonymous Sources in Korean Newspapers

(unit: frequency, %)

	Kyungyang (89)	Dong-A (142)	Chosun (231)	JoongAng (118)	Hankyoreh (108)	Hankook (110)	Total (798)	
Officials	57 (64.0)	92 (64.8)	121 (52.4)	56 (47.5)	47 (43.5)	61 (55.5)	364 (45.6)	$\chi^2 = 17.39^{**}$
one/part/different	32 (36.0)	38 (26.8)	44 (19.0)	46 (39.0)	57 (52.8)	39 (35.5)	256 (32.1)	$\chi^2 = 44.85^{***}$
Name of specific party	19 (21.3)	46 (32.4)	69 (29.9)	26 (22.0)	19 (17.6)	28 (25.5)	207 (25.9)	$\chi^2 = 10.78.$
Ruling party/ opposition party	4 (4.5)	33 (23.2)	29 (12.6)	6 (5.1)	28 (25.9)	10 (9.1)	110 (13.8)	$\chi^2 = 40.39^{***}$
close to / core/ side	10 (11.2)	21 (14.8)	35 (15.2)	20 (16.9)	11 (10.2)	23 (20.9)	120 (15.0)	$\chi^2 = 6.31$
ministry names	17 (19.1)	25 (17.6)	41 (17.7)	20 (16.9)	25 (23.1)	18 (16.4)	146 (18.3)	$\chi^2 = 2.25$
newly-elected/ re-elect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20 (22.5)	16 (11.3)	11 (4.8)	12 (10.2)	19 (17.6)	16 (14.5)	94 (11.8)	$\chi^2 = 25.39^{***}$
Region	0 (0.0)	4 (2.8)	11 (4.8)	6 (5.1)	7 (6.5)	10 (9.1)	38 (4.8)	$\chi^2 = 10.9$
in/at/... etc	1 (1.1)	4 (2.8)	33 (14.3)	12 (10.2)	0 (0.0)	4 (3.6)	54 (6.8)	$\chi^2 = 40.42^{***}$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job position	2 (2.2)	6 (4.1)	24 (10.4)	26 (22.0)	17 (15.7)	8 (7.3)	83 (10.4)	$\chi^2 = 34.43^{***}$
Others	3 (3.4)	20 (14.1)	15 (6.5)	3 (2.5)	13 (12.0)	3 (2.7)	57 (7.1)	$\chi^2 = 23.27^{***}$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익명 취재원 사용 관행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주요 6개 일간지와 미국 뉴욕타임스의 정치기사가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 실명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지, 그리고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을 분석했다. 기사에 사용된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은 저널리즘이 뉴스 이용자에게 신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불가피하게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익명 취재원의 발언이 믿을 만한지를 뉴스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진 언론의 제작 지침을 국내 주요 언론이 얼마나 준수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서 한국 주요 신문 기사 975건과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 113건 등 총 1,088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사의 45.5%(444건), 뉴욕타임스 기사의 48.7%(55건)가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익명 취재원 사용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높은 것이며 이 연구가 익명 취재원의 빈도가 더 높은 정치기사만을 분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기사당 사용된 평균 익명 취재원 수는 국내 신문사와 뉴욕타임스가 각각 0.82개, 1.12개로 뉴욕타임스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뉴욕타임스 기사에 사용된 취재원 숫자가 많기 때문일 수 있어 전체 취재원 수 중 익명 취재원의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취재원 중 익명 취재원의 비중은 국내 23.16%, 뉴욕타임스 14.95%로 나타났다. 즉, 국내 정치기사의 익명 취재원 비중이 뉴욕타임스에 비해 약 8%p 더 높은 것이다.

이어, 정치기사에 사용된 익명 취재원 925건(국내 신문 798건, 뉴욕타임스 127건)을 대상으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의 관행을 분석했다. 첫 번째로 정치기사에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국내 기사의 경우 익명 취재원이 사용된 전체 사례 798건 중 10건(1.25%)에서만 '익명을 요청한', '불이익 관련 요청' 등으로 사용 이유를 밝혔다. 국내 신문은 익명 취재원 사용 이유를 거의 밝히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뉴욕타임스는 127개의 익명 취재원 중 10개(7.87%)에 대해 익명 취재원 사용 이유를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뉴욕타임스가 익명 취재원 사용의 이유를 얼마나 밝히는지를 조사한 선행연구보다 크게 낮는데(Gladney, Sapiro, & Ray, 2013) 이는 뉴욕타임스의 경우 기사의 시작 부분에 익명 취재원 사용 이유를 미리 밝히는 경우가 많아 개별 익명 취재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번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설명한 익명 취재원 사용이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두 나라의 언론사 모두 뉴스 이용자들에게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인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국내 798건의 익명 취재원 표기 중 60건(7.5%)이 익명 취재원의 경력, 경험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뉴욕타임스는 127건의 익명 취재원 중 48건(37.8%)이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했다. 한편, 정보의 질에서도 국내 신문과 뉴욕타임스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국내 정치기사

의 익명 취재원 정보는 ‘회동 참석자’,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 등으로 간단한 반면,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의 자문단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 중 적어도 한 사람” 등과 같이 보다 맥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정치기사에서 익명 취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표기하는지를 분석했다. 익명 취재원 표기는 국내 신문이 뉴스 이용자에게 익명 취재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중요하다. 그 결과, 국내 정치기사는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 ‘관계자’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익명 취재원의 45.6%가 ‘관계자/인사’였으며 ‘한/ 일부/ 다른’도 32.1%로 흔히 사용됐다. 특정 정당명(25.9%), 부처명(18.3%), ‘측근/ 핵심/ 친(親)/ 측’(15.0%)도 자주 사용됐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익명 취재원 사용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규범적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지는 않고 있으며, 국내 신문들은 이러한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의 정치기사 익명 취재원 사용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로, 한국 언론의 현실은 익명 취재원에 대한 보도 지침이나 규범 등과는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2017년, 2020년에 각각 취재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 등을 개정하면서 익명 취재원 관련 규범도 매우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경우 취재원 명시, 인용과 관련해 총 22개의 세부 항목을 마련하고, 그 중 ③항에서 “익명으로 보도할 경우 익명의 제보자가 어떻게 제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정보를 제공하게 된 동기와 익명을 요청하는 사유, 취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기사 안에 상술해야 한다”고 했다(조선일보, 2017, 12, 26). 또 한겨레도 ‘투명한 보도’ 항목에서 익명 취재원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한겨레, 2020, 5, 14). 그러나, 이러한 규범이 기사 작성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 국내 언론의 익명 취재원을 통해서 뉴스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하나의 기사에 익명 취재원에 대한 설명은 없고, ‘같은 듯 다른 취재원’ 혹은 ‘다른 듯 같은 취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기사 내에서 반복되고 있어 뉴스 이용자는 이들이 같은 취재원인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2019년 10월 24일자) “청년들을 모십니다” 제목의 기사는 여야가 총선에 대비해 청년들을 최우선으로 영입한다는 내용으로 총 7명의 취재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명의 취재원은 당 고위 관계자, 한 초선 의원, 한 당직자, 당 관계자, 당 관계자, 당 관계자 등으로 모두 익명이다. 뉴스 이용자로서는 6번 인용된 익명 취재원이 동일인인지, 다른 취재원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정치기사에 익명 취재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익명 취재원 중 다수는 왜 익명으로 처리했는지를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힌 브리핑 혹은 전혀 민감하지 않은 배경설명 등에서도 관행적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는 익명 취재원 사용에 대한 관행을 연구한 뒤 한국 언론의 익명 보도는 기자의 편의에 의해, 준(準)제도적 관행으로서 자리잡혀 있다고 진단한 결과(오해정·김경모, 2020)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의 지침인 익명 취재원 사용의 이유를 밝히는 등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저널리즘 학계에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지침으로 제시하는 1) 공식적인 발표, 회의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다룰 때에는 사용하지 말 것(Duffy & Freeman, 2011), 2) 공공부문의 부패, 비판적 정보의 공개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Wilkins, 1997) 등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출입처 중심인 현재 한국 언론의 취재 관행과 정치 기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편 당연해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한국 언론이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이유는 취재 편의주의와 결합하고(오해정·김경모, 2020) 출입처 취재원과 기자 사이의 사적인 친분관계 유지(박동숙·조연하·홍주현, 2001)하기 위해서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선행연구의 심층 인터뷰에서도 기자들은 익명 취재원 사용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출입처나 자주 인터뷰하는 취재원의 경우 취재원과 익명, 실명 표기에 대한 논의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창숙, 2020). 이 연구에서는 출입처에서 익명 취재원은 취재원의 지위에 따라 핵심 관계자, 주요 관계자, 관계자 등 표현 수위를 정해 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선행연구에서 익명 취재원의 부작용 혹은 폐해로 지적했듯(Tuchman, 1978) 국내에서도 취재원들이 익명 관행을 여론을 떠보는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흔하다고 밝혔다. 만일, 익명 취재원이 취재원의 애드벌룬으로 악용된다면, 언론이 권력의 감시기관이 아니라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한국과 미국 정치기사의 익명 취재원 사용 관행의 차이점을 분석한 이 연구도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분석 대상이 국내의 6개 신문사와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그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갖고 있다. 다만, 6개 주요 언론사가 차지하는 국내 신문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국내의 여러 신문과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비교했다는 점 등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분석 방법 중 익명 취재원의 표기 유형의 분석에서도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익명 취재원 표기법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정치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탓에 일부에서는 유형의 구분이 다소 엄밀하지 못하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익명 취재원 분류를 미국의

선행연구를 참고했다는 점(Gladney et al., 2013), 그리고 탐색적 성격의 연구가 지니는 필연적 문제라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익명 취재원 사용의 이유를 분석할 때, 익명 취재원이 등장할 때의 문장에 사용 이유나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살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뉴욕타임스의 익명 취재원 사용 이유나 관련 정보 제공의 사례가 실제보다 적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국내 언론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관행이나,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을 익명 취재원의 비중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이유를 밝혔는지,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정치 기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익명 취재원 표기는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익명 취재원 사용 관행이 얼마나 일상적이며 선진 언론은 물론, 자신들의 제작 지침에서도 벗어나 있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lexander, A (2009, August 16). *Post* often ignores its own rules on anonymous sources. *The Washington Post*. Retrieved from <http://www.washingtonpost.com/2p-dyn/content/article/2009/08/14/AR2009081401928.html>
- Bennett W.L. (2009).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유나영 (역) (2009). <뉴스, 허깨비를 좇는 정치>. 서울: 책으로보는세상.
- Bennett, W.L. & Lawrence, R. G. (2006). None Dare Call It Torture: Indexing and the Limits of Press Independence in the Abu Ghraib Scandal. *Journal of Communication*, 56(3), 467-485.
- Bernays, E. L. (1928). Propaganda. 강미경 (역) (2009). <프로파간다>. 서울: 공존.
- Blankenburg, W. B. (1992). The utility of anonymous attribution. *Newspaper Research Journal*, 13(1/2), 10-23.
- Blumler, J. G., McLeod, J. M. & Rosengren, K. E(Eds.)(1992). Comparatively speaking: communication and culture across space and time. Newbury Park, C. A.: Sage.
- Boeyink, D. E.(1990) Anonymous sources in news stories: Justifying exceptions and limiting abuse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5(4), 233-246. doi: 10.1207/s15327728jmme0594_2
- Boyd, J., Hausrath, L., & Seppa, N. (1983, October). Alice in Washington. *The Quill*, pp. 15-19.
- Brown, J. D., Bybee, C. R., Wearden, S. T., & Straughan, D. M. (1987). Invisible power: Newspaper news sources and the limits of diversity. *Journalism Quarterly*, 64(1), 45-54.
- Cho, D. & Yang, S. (2006). Anonymous reporting 80.5%, 42% of news sources are anonymous. *Newspaper & Broadcasting*, 2, 8-18.
- Choi, Y-K. (2020). A study on the anonymous source's bias in the news report of prosecution's investigation by the ground wave broadcasting st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7(4), 196-239.
- Chosun Ilbo (2017.12.26.). Code of Ethics Guidelines. [On-Lin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6/2017122601251.html
- Coile, Z. (2005, June 1). Watergate case shows value of anonymous sources. *San Francisco Chronicle*. Retrieved from http://articles.sfgate.com/2005-06-01/news/17376864_1_guantanamo-bay-sources-journalism.
- Culbertson, H. (1978). Veiled attribution-An element of style? *Journalism Quarterly*, 55, 456-465.
- Donsbach, W & Klett, B (1993). Subjective objectivity. How journalists in four countries define a key term

- of their professio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51(1), 53-83.
- Duffy, M. J. (2014). Anonymous sources: A historical review of the norms surrounding their use. *American Journalism*, 31(2), p. 236-261. doi: 10.1080/08821127.2014.905363
- Duffy, M. J & Freeman, C. P. (2011). Unnamed sources: A utilitarian exploration of their justification and guidelines for limited use.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6(4), 297-315.
- Gans, H. J. (1979). Deciding what's news: story suitability. *Society*, 16(3), 65-77.
- Gladney, G. A., Shapiro, I., & Ray, R. (2013). Reasons for veiled sources spike after 2004 scandals. *Newspaper Research Journal*, 34(2), 36-49. <https://doi.org/10.1177/073953291303400204>.
- Haiman, R. J. (1998). Hey, editors: Just stop the nonsense, *Newspaper Research Journal*, 19(4), 2-9.
- Hale, F. D. (1984). Unnamed news sources: Their impact on the perceptions of stori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5(2), 49-56.
- Hankyoreh. (2020.05.14.). The Hankyoreh Media's reporting rules. [On-Line]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944867.html>
- Hong, Y. (2015). A study of anonymous sources : Focusing on the front-page stories of the Chosun Ilbo.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Jung, P. (2015). The temptation to attract attention and the fall of trust. *Broadcast reports*, 27, 14-15.
- Kim, C. (2019). *Fact checking or Fact making? A Study on Korean Newspaper Factchecking Pract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C. (2020). A Study on Korean Newspaper Fact-Checking Practices : Major daily newspapers, social department reporter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7(3), 286-335.
- Kim, K. Kim, J. Park, J. Pae, J-G, Lee, N. Y. Lee, W. S., & Lee, J. (2020). *The Quality of Television News: Comparison of TV news in Domestic and Foreign Broadcasters*. Seoul: Ewhapress.
- Kim, K. Park, J. Pae, J-G, Lee, N. Y., & Lee, J. (2020). *The Quality of Newspaper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daily newspapers and overseas influential newspapers*. Seoul: Ewhapress.
- Kim, J-Y. (2006). The differences in sourcing conventions between Chosun-Ilbo and Okchun-shinmo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0(1), 137-162.
- Lee, G. H. & Jung, W. K. (2009). Depth of News Reporting and Writing: Analysis of Transparent Sources, Viewpoints, Stakeholders in Front Page Stories.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21, 5-48.
- Lee, J. (2001). the Use of Reporters in Korean and American Newspapers. *Press Criticism*, 7, 53-82.
- Lee, J. & Kim, J. (2000). Practices of Using News Sources in Korean Newspaper Articles, Paper presented at

-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291-307.
- Lee, K. (2020). The Impact of Anonymous News Sources in News Reports on Article Reliability. Paper presented at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103-103.
- Lee, Y-H. & Cho, Y-H. (2017). A Study of Perception of TV Reporters about Anonymous News Sources - Focusing on the Reporting Practice, Motivation, Effect of the Anonymous Sourc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1(5), 241-273.
- Lewis, S. C., & Reese, S. D. (2009). What is the war on terror? Framing through the eyes of journalist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6(1), 85-102.
- Martin-Kratzer, R., & Thorson, E. (2007). Use of anonymous sources declines in U.S. newspaper. *Newspaper Research Journal*, 28(2), 56-70.
- Menz, F. (1989). Manipulation strategies in newspapers: a program for critical linguistics. *Language, power and ideology*, 7, 227-281.
- Meyer, P. (2008). BALCO, the steroids scandle, and what the already fragile secrecy of federal grand juries means to the debate over a potential federal media shield law. *Indiana Law Journal*, 83(4), 1672-1693.
- Mill, J. S. (1991). Utilitarianism. In J. Gray (Ed.), *On liberty and other essay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ollenhoff, C.(1981, May/June). A lack of clear standards for sound corroboration.
- Nam, J. (2006). *Current State of Media Ethics and Tasks in Korea*.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Oh, H. J & Kim, K. (2020). Anonymous Sources in Public Broadcasting News : A Comparative Analysis of KBS <News 9> and BBC <News at 10>.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4(1), 49-90.
- Okrent, D. (2004). *Great Fortune: The Epic of Rockefeller Center*. Penguin.
- Park, A. & Lee, S. (2020). *Digital News Report of Korea 2020*.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Park, D. (2015). A Study of Double Validity Claims in Quotations : News Source Network Analysis of News on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in the Dong-A Ilbo and the Hankyoreh.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9(5), 121-151.
- Park, D-S. Cho, Y-H. & Hong, J-H. (2001). A Qualitative Study of News Source-Reporter Relations - On the Problems of Beat Reporting System.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5, 367-396.
- Park, J. (2007). *2007 News Evaluation Index Research Paper*.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Park, J. (2014). The cause of the media crisis is 'Reporter's Writing'. *Kwanhun Journal*, 131, 127-129.
- Park, J. & Lee, W. S. (2007). Quotation & Attribution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U.S. Newspap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1(6), 439-468.
- Purvis, H. (2015). Anonymous source: More or less and why and where? *The Southwestern Mass Communication Journal*, 30(2), 2-21.
- Rhe, J., Yang, S., Kim, K. & Song, H. (2007). Direct Quotations in Newspaper Headlines in the Coverage of the Local Election on May 31, 2006.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1(3), 64-90.
- Schiller, D. (1979). An historical approach to objectivity and professionalism in American news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49(4), 46-57.
- Sigal, L. V. (1973). Reporters and officials: The organization and politics of newsmaking. Lexington, MA: D.C. Heath and Company.
- Shaw, D. (1984). *Press Watch*. New York: Macmillan.
- Seelye, K. Q. & Lewis, N. A. (2005, May 17). Newsweek retracts account of Koran abuse by U. S. military.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2005/05/17/politics/17koran.html>
- Shepard, A. (1994, December). Anonymous sources. *American Journalism Review*. Retrieved from <http://www.ajr.org/Article.asp?id=1596>
- Song, S. (2016). A Study of Sourcing Patterns in the News Coverage of the Ferry Sewol Disaste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5), 34-62.
- Sternadori, M. M., & Thorson, E. (2009). Anonymous sources harm credibility of all stori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30(4), 54-66.
- Stenvall, M. (2008). Unnamed sources as rhetorical constructs in news agency reports. *Journalism practice*, 9(2), 229-243.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 Vultee, F. (2010). Credibility as a strategic ritual: The Times, the interrogator, and the duty of naming.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5(1), 3-18.
- Wilkins, L. (1997). Anonymous sources. In *Journalism Ethics* (pp.117-122). Santa Barbara, CA:ABC-CLIO
- Wulfemeyer, K. & McFadden, L. (1986). Anonymous attribution in network news. *Journalism Quarterly*, 63, 468-473.

최초 투고일 2021년 03월 29일
게재 확정일 2021년 06월 04일
논문 수정일 2021년 06월 07일

부록 I. 참고문헌

- 김경모·김지현·박재영·배정근·이나연·이완수·이재경 (2020). <텔레비전 뉴스의 품질: 국내의 방송사의 텔레비전 뉴스 비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김경모·박재영·배정근·이나연·이재경 (2018). <기사의 품질: 한국 일간지와 해외 유력지 비교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재영 (2006). 취재원 활용 관행의 차이: 조선일보와 옥천신문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50권1호, 137-162.
- 김창숙 (2019). 사실확인인가, 사실 만들기인가: 한국 신문 사실확인 관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창숙 (2020). 한국 신문 사실확인 관행 연구: 주요 일간지 사회부 취재기자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7권3호, 286-335.
- 남재일 (2006). <한국 언론윤리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대민 (2015). 사실기사의 직접인용에 대한 이중의 타당성 문제의 검토: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4 대강 추진 논란 기사에 대한 뉴스 정보원 연결망 및 인용문 분석. <한국언론학보>, 59권5호, 121-151.
- 박동숙, 조연하, & 홍주현. (2001).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적 친분 고리: 출입처에서의 취재원과 기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탐구. <한국언론학보>, 45(특별), 367-396.
- 박아란·이소은 (2020).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한국>.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재영 (2007). <2007 뉴스평가지수 연구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재영 (2014). 언론 위기의 원인은 '기자의 글'. <관훈저널>, 131, 127-129.
- 박재영·이완수 (2007). 인용 (quotation) 과 취재원 적시 (attribution) 에 대한 한미 (韓美) 신문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6호, 439-468.
- 송상근 (2016). 취재원 사용의 원칙과 현실. <한국언론학보>, 60권5호, 34-62.
- 이기명 (2020). <언론의 익명 취재원 보도가 기사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3-103.
- 이건호·정완규 (2009). 취재 영역 및 보도 형태별 뉴스 심층성 연구: 한·미 신문 1 면 기사에 나타난 투명 취재원, 복합 관점, 이해 당사자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21권, 5-48.
- 이윤희·조연하 (2017).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방송 기자의 인식 연구: 취재원 표기 및 편집 방식, 동기,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1권5호, 241-273.

- 이재경 (2001). 한미 신문의 취재원 이용 관행: 한국과 미국 신문의 취재원 사용 관행. <보도비평>, 통권7호, 53-82.
- 이재경·김진미 (2000). <한국 신문 기사의 취재원 사용 관행>.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1-307.
- 이준용·양승목·김규찬·송현주 (2007). 기사 제목에 포함된 직접인용부호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 <한국언론학보>, 51권3호, 64-90.
- 오해정·김경모 (2020). 공영방송 TV 뉴스의 익명 취재원 이용: KBS<뉴스 9> 와 BBC<10 시뉴스> 의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보>, 64권1호, 49-90.
- 정필모 (2015). 시선 끝기의 유희과 신뢰의 추락. <방송기자>, 27, 14-15.
- 조동시·양승혜 (2006). 익명보도 많은 편 80.5%, 취재원의 42%가 익명. <신문과 방송>, 2, 8-18.
- 조선일보 (2017, 12, 26)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On-Lin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6/2017122601251.html
- 최윤규 (2020). 지상과 방송사의 검찰수사 뉴스보도에서 나타난 익명 정보원 편향에 관한 연구: 조국 수사 관련 정보원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7권4호, 196-239.
- 한겨레 (2020, 5, 14) 한겨레미디어 취재보도준칙. [On-Line]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944867.html>
- 홍연희 (2015). <한국 신문의 익명 취재원 사용 관행 연구: 조선일보 1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록 II.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한 익명 취재원 사용에 대한 지침

익명 취재원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익명으로 보도하지 않았을 때 공익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다음을 초과할 때

- 공중: 해당 정보를 사실 확인하기 어려워짐
 - 실명 집단에 대한 명성: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됨
 - 저널리즘의 전문성: 투명성 결여에 따른 신뢰 저하의 문제를 개별 기업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
-

2.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최소 한 명 이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것
 - 취재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수용자들이 취재원의 정보제공 동기와 자격을 파악
 - 왜 익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있는 정보
-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익명 취재원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음

- 정부 관계자로부터 얻는 일상적 정보. 정부 관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 예는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 정책 변화 등임.
-

정치 기사 익명 취재원 표기 관행 미국 뉴욕타임스와 한국 주요 일간지 비교 연구

이나연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김창숙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

김지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이 연구는 국내 일간지의 정치기사에 사용된 익명 취재원의 표기법을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비교하여 국내 기사 작성 관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익명 취재원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윤리적 규범에도 불구하고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뉴스 이용자에게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라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토대로 두 나라 기사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정보는 1) 취재원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이유를 기사에서 설명하는지 2) 뉴스 이용자가 익명 취재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내 정치기사에서 익명 취재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6개 일간지의 정치기사 975건과 뉴욕타임스 정치기사 113건 등 1088건을 내용분석한 결과 전체 기사 중 499건(45.9%)에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99건의 기사에는 익명 취재원이 총 925번 사용되었으며 이 가운데 국내가 798건, 뉴욕타임스가 127건이었다. 분석 결과, 국내에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며 그 이유를 밝힌 사례는 10건(1.3%)에 불과했으며, 뉴욕타임스도 10건(7.9%)에 머물렀다.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기사는 국내 60건(7.5%), 뉴욕타임스 48건(37.8%)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국내 정치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익명 취재원 표기법은 '관계자'로 364건의 익명 취재원에서 사용되었다.

핵심어 : 익명 취재원, 익명 취재원 사용 이유,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정보, 익명 취재원 표기 분류